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23

발의연월일: 2025. 5. 28.

발 의 자: 민형배·정동영·김성환

이개호・박지원・김문수

김동아 · 소병훈 · 김현정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 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 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립표결로가부를 결정할"을 "기립표결 또는 수기투표(手記投票)로 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4조(수기 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기투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 2.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있다.
 -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

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12조(표결방법) ① <u>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u>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u>기립표</u>결로 가부를 결정할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 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 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 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 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

제112조(표결방법) ① <u>기명 또는</u> 무기명으로 표결할 때에는 전 <u>자투표로 한다.</u> -----

-----기립표결 또는 수기투 표(手記投票)로 할-----.

② ~ ⑧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14조(수기 기명투표·무기명투 표 절차)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기투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 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 2.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

역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 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